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2. 1 선고 2022가단9418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

피 고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육오
담당변호사 이주상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동식
변 론 종 결 2023. 1. 11.
판 결 선 고 2023. 2. 1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2022. 3. 17. 체결된 별지 목록 (1)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, 주문 제2항과 같다. 예비적으로,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(1)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C, D,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B은 2020. 7. 16. 주식회사 F로부터 별지 목록 (2)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을 보증금 200,000,000원, 차임 월 15,000,000원, 기간 2020. 8. 20.부터 2025. 8. 19.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(이하 ‘이 사건 임대차계약’이라 한다), 이 사건 건물에서 ‘G슈퍼마켓’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.

나. B은 2021. 2. 9. 주식회사 H으로부터 300,000,000원을 대출받으면서, 원고와 B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(이하 ‘이 사건 신용보증약정’이라 한다),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2호는 B의 폐업을, 제13호는 B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를 각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의 발생사유로 정하고 있다.

다. 원고는 2021. 2. 9.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주식회사 H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285,000,000원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.

라. B은 2022. 4. 1. 동고양세무서가 부과한 국세 10,000,000원을 체납하였고, 2022. 5. 6. 위 G슈퍼마켓을 폐업하였다.

마. B이 2022. 6. 11. 주식회사 H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와 주식회사 H 사이의 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이에 따라 원고는 2022. 10. 14. 주식회사 H에게 290,290,068원(= 대출원금 285,000,000원 + 이자 5,290,068원)을 대위변제하였다.

바. B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20. 8. 19. 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20년 제179호로 B이 피고로부터

150,000,000원을 이월 월 1,500,000원, 변제기 2022. 8. 19.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.

사. B은 2022. 3. 17.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(이하 ‘이 사건 채권양도’라 한다),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C, D, E에게 각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

아. B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채권 외의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,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, 8, 9, 10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, 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피보전채권

1) 관련 법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다27905 판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.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은 B이 국세를 체납함으로써 그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22. 4. 1.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나,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, 즉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은 위 2022. 4. 1.로부터 불과 15일 전인 점, B이 위와 같이 위 슈퍼마켓을 폐업하고, 주식회사 H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게 된 것은 위

슈퍼마켓의 영업부진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, 위 폐업시기와 이 사건 채권양도와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슈퍼마켓의 영업이 부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,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대물변제된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에는 피고의 B에 대한 임금채권

39,404,752원이 포함되어 있는데, 그 내역에 비추어 B은 2021. 12. 24.부터 피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고, 이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따라서 위 사전구상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).

나. 사해행위 및 B, 피고의 악의

1) 관련 법리

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,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,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(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28045 판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.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 200,000,000원 뿐으로서 그 가액이 소극재산 합계 489,404,752원(=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,000,000원 + 위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 150,000,000원 +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 39,404,752원)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, 이 사건 채권양도의 성격 및 경위에 비추어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, 따라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(따라서 이 사건

채권양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선의라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).

다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그 원상회복의 방법

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,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,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다50061 판결), 갑 제12, 13,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2022. 5. 2. C, D,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00,000,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같은 날 C,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,000,000원, 차임 월 15,000,000원, 기간 2022. 5. 2.부터 2027. 5. 1.로 각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위와 같이 새로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,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,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위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)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동원

별지